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825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숲길조성계획 수립 시 맨발걷기길 포함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3. 12.

다. 회 부 일 : 2025. 3.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의 종류에 대해 규정하고 숲길 종류별로 숲길기본계획과 숲길연차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숲길관리청(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계획에 따라 해당 숲길의 노선이 포함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시민들 사이에 공원 등에서 맨발걷기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맨발걷기는 발바닥의 지압효과 및 접지효과를 통해 혈액순환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여가 활동으로 여겨지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 숲길에도 맨발걷기가 가능한 산책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숲길관리청이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숲길 노선 중

일부를 맨발걷기가 가능한 숲길로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숲길조성계획 수립 시 맨발걷기길 포함

개정안은 숲길관리청이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숲길 노선에 맨발걷기가 가능한 노선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숲길의 조성 등) ① . ② (생략) <u><신설></u>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숲길조성계획의 수립, 타당성 평가의 절차, 숲길 명칭의 부여, 숲길 노선의 지정·변경·지정 해제 및 그 고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숲길의 조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숲길 노선에 맨발걷기가 가능한 노선 ‘맨발걷기길’을 포함하여야 한다¹⁾</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u>제1항부터 제3항까지</u> ----- ----- ----- ----- ----- -----.

1) ‘맨발걷기길(맨발걷기가 가능한 노선을 말한다)’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맨발걷기가 인기를 얻으면서 2023년부터 전국의 172개 지방자치단체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²⁾ 공원, 산책로 등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³⁾

최근 국회를 통과('25.3.20.)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치유관광자원의 정의에서 ‘맨발걷기길’을 치유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 자원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음.⁴⁾

이처럼 맨발걷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숲길에도 맨발걷기가 가능한 산책로를 조성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맨발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숲길조성계획 수립 시 맨발걷기가 가능한 노선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활용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모든 숲길조성계획에 일률적으로 맨발걷기길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경사지가 많은 숲길에서 안전상의 문제 등 부작용이

2) (예시)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 명칭은 맨발걷기길, 맨발 산책로, 맨발 보행로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음.

3) 광명시, 도심 속 공원‘맨발 걷기 길’조성(2024.10.16., 광명시 보도자료)

4)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관광”이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치유관광자원”이란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 등 치유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을 말한다.

발생할 수 있다는 관련 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산림청은 맨발걷기길 조성을 의무조항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 지역 환경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숲길관리청에서 숲길조성계획 수립 시 맨발걷기 등 다양한 건강증진 활동을 자율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임.⁵⁾

숲길관리청인 지방산림청(북부·동부·남부·중부)은 맨발걷기길 조성 시 세죽장, 화장실 설치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 및 주변 개발이 불가피하고, 숲길 내 암석, 뱀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며,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맨발걷기길을 의무화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임.

숲길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경기도·경상북도·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는 개정안에 반대하거나 의무화보다는 필요 시 조성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5) 숲길관리청(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숲길의 명칭, 목적, 거리뿐 아니라 **그 밖에 숲길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

※ 참고로, 산림청에 따르면 숲길 노선은 산림 내에 1.2m의 노폭(이용객이 숲길을 이용하는 구간의 폭)으로 조성이 되고, 노폭은 이용자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므로 이곳에 맨발숲길을 조성할 경우 일반 숲길 이용객과의 갈등도 예상된다는 설명임.

【 개정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견 】

지방자치단체 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경기도	○ 맨발걷기는 숲길을 이용하는 하나의 방식(또는 기능)이고, 일선에서는 조성을 반대하는 민원 및 의견도 있는 만큼 강제조항보다 재량권을 부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경상북도	○ 공원 산책로와 달리 숲길은 대부분 산림 내에 조성되며, 현지 여건에 따라 경사가 심하고 빗물에 쉽게 유실되는 등 유지·보수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함. ○ 숲길 내 맨발걷기길 조성 시 세족장 등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추가적인 산림훼손이 발생함. ○ 따라서, 지자체 예산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조성할 수 있도록 수정 반영함이 타당함.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맨발걷기길은 접근성이 좋은 공원이나 마을에 인접하여 조성하는 것이 이용자들의 요구에 적합한 장소임. ○ 숲길의 특성상 경사지가 많아 맨발걷기를 위해 황톳길을 조성할 경우 미끄러짐 사고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대상지 선정에 신중해야 하나, 의무화할 경우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조성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개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국가숲길의 운영·관리업무 위탁기관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맨발걷기길 조성을 위한 작업로 개설 및 작업과정에서 산림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지·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흙과 황토 등을 보수하여야 하나 숲길은 경사, 고도로 인해 작업환경이 제한적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⁶⁾

6)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임도가 없는 숲길은 숲길 관리자가 직접 흙과 황토 등을 맨발걷기길까지 운반해야 하므로, 유지보수비가 최소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423
